

제 호

농지 [] 임대차
[] 사용대차 종료명령서

임대인	1. 성명(명칭)		임차인 (사용 대차인)	1. 성명(명칭)	
	2.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		2. 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3. 주소			3. 주소	

4. 종료명령대상 농지 및 그 면적							
소 재 지				지 번	지 목	면적(㎡)	비 고
시·도	시·군	읍·면	리·동				
합 계							

5. 종료명령 발생사유						
6. 종료명령 일자 및 기한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

「농지법」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 (임대차 또는 사용대차) 계약을 종료명령기한까지 종료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- 1. 이 통지서에 따라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농지법」 제60조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.
- 2. 이 통지서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.